
청탁금지신고방 설치 계획

전라북도
(감사관실)

청탁금지신고방 설치 계획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신고처리를 위해 도 홈페이지 등에 온라인 신고방을 개설하고자 함

□ 설치개요

- 개설시기 : 2016. 9. 28.
 - 위 치 : 전라북도 홈페이지 및 행정포털(청탁금지 신고방)
 - 내 용 : 신고방법 및 처리절차 안내, 신고접수 등
- ※ 방문 상담 및 신고는 '부정청탁 상담·신고센터 (감사관실)'에서 실시

□ 설치계획(안)

1. 전라북도 홈페이지 「청탁금지 신고방」

- 설치방법 :
 - 청탁금지 신고방 배너설치
(민원상담코너에 연결되도록 하여 민원상담코너에 「청탁금지 신고하기」 메뉴 개설)
- 위 치 : 홈페이지 메인화면 우측 하단부에 배너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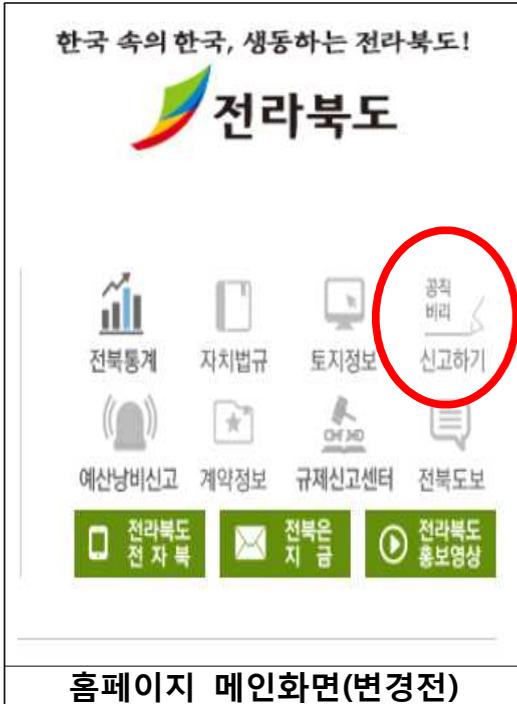
2. 행정포털 「청탁금지 신고방」

- 설치방법 : 홈페이지 청탁금지 신고방을 행정포털에 연결
- 위 치 : 행정포털 배너 또는 관련사이트에 추가 설치

□ 이후계획

- 홍보기획과 및 정보화총괄과에 협조 요청

<배너 현행>



홈페이지 메인화면(변경전)

<배너 개편>



홈페이지 메인화면(변경후)

<팝업 설치(안)>

부정청탁 금지 신고대상 및 신고방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및 허용행위)

이 신고방은 2016. 9. 2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행위, 무사안일 등에 대해 신고하는 곳입니다. 신고하신 내용과 개인정보는 비밀이 보장되오니 안심하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신고대상

- 부정청탁 :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지
 - ※ 부정청탁 금지행위 14개 유형 및 허용행위 7개 유형 [붙임]
- 금품등 수수
 -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동일인으로부터 직무와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 ※ 금품등 수수 허용행위 8개 유형 [붙임]
- 기 타 : 위법·부당한 행정행위, 공무원의 무사안일·금품수수 등 부조리, 특정인에게 특혜 제공 등

2 신고방법

-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신고(자진신고용)
-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이유·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 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제3자 신고용)

신고하기 ➡

이 신고방은 2016. 9. 2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곳입니다. 신고하신 내용과 개인정보는 비밀이 보장되오니 안심하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신고대상

● 부정청탁 :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지

금지행위 14개 유형	허용행위 7개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 인허가·면허 등 처리 · 법령을 위반한 행정처분·형벌부과의 감경·면제 · 채용·승진 등 인사개입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의 선정·탈락에 개입 · 각종 수상·포상 등의 선정·탈락에 개입 ·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 누설 · 보조금·기금 등의 배정·지원·투자 등에 개입 · 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 입학·성적·수행평가 등 학교업무의 처리·조작 · 법령을 위반한 병역관련 업무 처리 ·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관정업무 개입 · 행정지도·단속 등의 대상 배제, 위법사항 묵인 · 사건의 수사·재판 등에 개입 · 특정인의 계약선정 또는 탈락에 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기준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측정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 ·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확인·문의하는 행위 ·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 금품수수

- 공직자등이 동일인으로부터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은 경우
- 외부강의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수수한 경우

※ 허용행위 8개 유형

-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식대(3만원), 선물(5만원), 경조사(10만원)
- 사적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 공직자등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등
- 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등
-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신고서(자진 신고용)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소속	연락처		
	주소			
부정청탁을 한 자 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신고취지 및 이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내용(금품등 수수의 경우 그 종류 및 가액)			
금품등 반환여부 및 방법(금품등 수수의 경우)	반환여부			
	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전라북도지사

귀하

신고서(제3자 신고용)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피신고자 (신고대상)	성명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피신고자 (신고대상)	성명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신고취지 및 이유		
법 위반행위 내용	일시	
	장소	
	내용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전라북도지사

귀하